
Policy and Law Report _Vol.149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08.16.~ 2022.08.21.) -

August 22, 2022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p>기획재정부</p>	<p>•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마련</p> <p>기획재정부는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새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함</p> <p>금번 개편방안은 기관 특성에 맞춰 상향식으로 수립중인 혁신계획의 취지와 부합하게 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립과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었으며, 공공기관 지정에서부터 내부운영(조직·인사·재무관리 등),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관리 등을 포괄하고 있음</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정기준 상향)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권한 및 기관의 자율성 확대 ② (차별화된 관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무관리(예비타당성, 출자·출연 사전협의)·경영평가제도 개선, 기타공공기관은 업무성격을 감안하여 관리 차등화 ③ (직무·성과 중심) 보수·인사·조직 관리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 ④ (투명성 제고) 이사화·감사 등 내부 견제기능 및 경영공시 강화 	<p>2022-08-18</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p>	<p>• 보안 규제개선으로 혁신적 신기술·서비스 공공도입 촉진 - 공공서비스 혁신과 관련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해묵은 규제 개선</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정원 등 관계부처 협의 및 산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보보호 규제개선 추진상황 및 계획'을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하고, 혁신적인 서비스의 확산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보안지침의 기존 규제를 개선하여 위성정보 보안,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및 정보보호제품 보안인증제도 개선, 무선영상전송장비 시험인증 서비스 시행을 본격 추진하기로 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위성정보) 국가 위성정보 해상도 규제 완화(4m→1.5m) 등으로 위성정보 활용 산업 활성화 ② (클라우드 보안) 보안인증을 3등급으로 구분, 등급별 차등화된 보안기준 적용 ③ (정보보호제품 인증) 신속확인제 도입으로 신기술 제품을 2~3개월 내 도입 가능 ④ (무선영상 전송) 공공기관용 무선영상전송장비 시험인증 서비스 개시 	<p>2022-08-18</p>

부처	내용	일시
국토 교통부	<p>•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p> <p>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270만호 공급 계획과 민간의 활력 제고, 공공의 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함</p> <p>무주택 서민 등의 내집 마련과 주거상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주택 시장의 근본적 안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과제들을 담음</p> <p>특히, 그동안 여러 공급대책들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 등으로 도심 등 선호 입지 공급이 위축되며 집값이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급등하였으며, 이로 인해 청년층, 무주택자 등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취약 계층 등의 주거 위기가 여전하다는 의견 등을 감안하여, 기존과는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둠</p> <p>단편적인 가격불안 대응책이 아닌, 안정적 공급 기반을 통한 근본적 시장안정 기반 구축, 주거 환경 및 품질개선, 재난 예방 등까지 포함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에 정책 목표를 둠</p> <p>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전략으로는</p> <p>① 도심공급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5년간 전국 22만호, 서울 10만호 -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 상향, 공공기여 사업장 감면제도 도입 - 안전진단: 구조안정성 하향,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미적용 - 민간 도심복합사업: 2023년 상반기 지자체 공모 착수 <p>②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택지: 15만호 신규 발굴, 10월부터 순차 발표 - GTX: A노선 2024.6월 이전 조기 개통, B·C노선 조기 착공 -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2024년 중 수립 - 재해 대응: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 연내 마련 <p>③ 공급시차 단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심의: 민간정비사업 등에도 통합심의 전면 도입 - 신규택지(100만㎡이하): 지구지정과 계획수립 절차 통합 <p>④ 주거사다리 복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원가/역세권첫집: 총 50만호 공급, 연내 3천호 사전청약 - 내집마련 리츠(임대로 살면서 자유롭게 분양받는 모델): 12월 시범사업 	2022-08-16

부처	내용	일시																														
	<p>⑤ 주택품질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층간소음 : 바닥두께 강화시 분양가 가산 등 비용인정 - 공공임대 : 신규주택 평형 확대, 노후임대 정비 본격화 <p>※ '23~'27년간 공급계획 ☞ 향후 5년간 270만호 공급 (연평균 54만호, 인허가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50만호 : 최근 5년보다 50%이상 많은 인허가 물량 ▪ 수도권 158만호, 수요가 많은 지방 대도시에도 52만호 공급 <p style="text-align: center;">< 지역별 공급계획 ></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만호)</p> <table border="1" data-bbox="325 763 1308 1052"> <thead> <tr> <th rowspan="2"></th> <th rowspan="2">'18~'22^e(A)</th> <th colspan="2">'23^e~'27^e(B)</th> </tr> <tr> <th></th> <th>증감(B-A)</th> </tr> </thead> <tbody> <tr> <td>전국</td> <td>257</td> <td>270</td> <td>+13</td> </tr> <tr> <td>수도권</td> <td>129</td> <td>158</td> <td>+29</td> </tr> <tr> <td> 서울</td> <td>32</td> <td>50</td> <td>+18</td> </tr> <tr> <td>비수도권</td> <td>128</td> <td>112</td> <td>△16</td> </tr> <tr> <td> 광역·자치시</td> <td>48</td> <td>52</td> <td>+4</td> </tr> <tr> <td> 8개 道</td> <td>80</td> <td>60</td> <td>△20</td> </tr> </tbody> </table>		'18~'22 ^e (A)	'23 ^e ~'27 ^e (B)			증감(B-A)	전국	257	270	+13	수도권	129	158	+29	서울	32	50	+18	비수도권	128	112	△16	광역·자치시	48	52	+4	8개 道	80	60	△20	
	'18~'22 ^e (A)			'23 ^e ~'27 ^e (B)																												
			증감(B-A)																													
전국	257	270	+13																													
수도권	129	158	+29																													
서울	32	50	+18																													
비수도권	128	112	△16																													
광역·자치시	48	52	+4																													
8개 道	80	60	△20																													
<p>중소기업 벤처부</p>	<p>• 벤처투자 규제 혁신을 위한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 <p>벤처투자 분야 규제를 혁신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p> <p>이번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 결성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건전한 투자시장 조성을 위한 피투자기업의 이해관계인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벤처투자조합 결성 애로 해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을 20억원→10억원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기획자의 평균 자본금, 자금(펀드)결성 규모 등을 감안해 창업투자회사(20억)와 차별화 - 벤처투자조합에서 출자받는 경우 출자자 수를 1인으로 산정하여 출자자 수 제한(49인 이하)에 따른 조합 결성 애로를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벤처투자조합에서 출자받는 규모가 조합 결성금액의 10% 미만인 경우로 한정 <p>②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규제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투자기업이 인수합병 등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더라도 벤처투자조합 등*은 피투자기업 주식을 5년간 한시 보유 허용해 인수합병(M&A)를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p>2022-08-16</p>																														

부처	내용	일시
	<p>③ 피투자기업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투자기업의 이해관계인(임원, 최대주주)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연대책임 부과를 제한하고 위반시 제재 	
금융위원회	<p>•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출범 및 1차 회의 개최</p> <p>민간전문가, 관계부처·기관이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가 출범하여 제1차 회의를 개최함</p> <p>* 금융규제혁신회의의 디지털혁신분과를 겸하여 운영</p> <p>그간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차관회의를 중심으로 가상자산시장 현안에 적극 대응해 왔음. 특히, 새 정부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 중임</p> <p>그동안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이 논의해 온 결과 등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를 출범하게 됨</p> <p>주요 내용으로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에 따라 출현한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 및 권리관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하는 한편,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 ② 전통 금융시장과 디지털자산 시장과의 연계성 확대, 디지털자산의 지급결제수단으로의 활용사례 증가 등에 따라, 디지털자산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 마련 ③ 시장 안정과 이용자 보호 강화 필요성에 따라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갖춘 디지털자산의 발행, 유통시장 규율체계 검토·마련 ④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정책수립, 보안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 범정부적으로 지원 	2022-08-17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p>과학 기술정보 통신부</p>	<p>•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2022.8.16. 시행)</p> <p>방송산업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방송사업자의 경영 및 소유에 관한 제한을 완화하고, 방송사업자 등에게 중요 시설변경에 대해 변경허가 등을 받도록 한 규제를 완화하며,</p> <p>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사업 허가나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을 운용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에게 제출하도록 한 서류제출 의무를 폐지하는 등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방송사업자의 경영 및 소유에 관한 제한 완화 (제4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영 및 소유가 제한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대상을 텔레비전·라디오 및 데이터 방송채널사용사업에서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한정하고, 특정 지상파방송사업자가 경영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상한을 전체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상향조정하여 방송사업자의 경영 및 소유에 관한 제한을 완화함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경영 및 소유 제한을 폐지함 -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허용되는 시장점유율*의 상한을 '100분의 33'에서 '100분의 49'로 상향조정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호간 경영 및 소유에 관한 제한을 완화함 <p>* 시장점유율: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총액 중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p> <p>② 방송사업자 등의 중요 시설변경에 대한 규제 완화 (제15조제1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은 변경허가 등을 받아야만 주전송장치의 설치장소를 이전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않고 이전할 수 있도록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p>③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허가나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제16조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유선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의 유효기간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각각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함 	<p>2022-08-16</p>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p>④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채널운용 관련 규제 완화 (제53조제3항, 현행 제55조제2항 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가 방송채널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 직접사용채널운용계획서의 제출 의무를 폐지함 -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정보 등을 제작·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에게 제출하도록 한 지역채널운용계획서의 제출 의무를 폐지함 	
환경부	<p>•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3.1.1. 시행 예정)</p> <p>미세먼지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등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하고, 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 자동차를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경유사용 자동차에서 2009년 8월 31일까지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경유 사용 자동차로 확대하려는 것임</p>	2022-08-16
고용노동부	<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8.18. 시행)</p> <p>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되, 사업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됨</p> <p>이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하는 사업주의 범위와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p> <p>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용 기계·장비 수리업 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강화하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건설공사도급인에 대한 지도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범위 (제96조의2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장을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신체적·정신적 피로도가 높은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등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정함 	2022-08-16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p>②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 (별표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 중 의복 제조업을 제외한 섬유제품 제조업, 산업용 기계·장비 수리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운수 및 창고업 등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해야 하는 대상을 '상시근로자 수 1천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확대함 <p>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명확화 (별표 18 제2호 및 제4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기술지도계약의 내용을 입력하도록 함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하도록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함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때마다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에게 알리도록 하고,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 <p>④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시 인력 기준 강화 (별표 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등 안전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가 없더라도 토목·건축 분야에서의 건설기술인 또는 기술자격자가 있으면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전담인력이 1명 이상 있어야만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p>⑤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별표 35 제4호투목 및 거목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지 않거나 건설공사도급인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정함 -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그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 내용 위반 1건당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으로 정함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고용 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2022.8.18. 시행,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1.1. 시행 예정) <p>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관리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됨에 따라,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등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정하는 한편,</p> <p>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가 국외제조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분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적지 않아도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공개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2022-08-18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국토 교통부	<p>•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 <p>주택단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각 동의 출입구' 대상을 공동주택 외 부대시설·복리시설까지 확대 해석하고 있어 그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하는 '각 동의 출입구'를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로 명확하게 한정하고자 함 (안 제9조 일부 개정)</p> <p>※ 의견 제시기간 : 8/17(수)~9/26(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로 제출</p>	2022-08-17
공정거래 위원회	<p>•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 <p>과태료 부과기준에서 가중처분 적용을 위한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시점 명확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안 제69조 [별표 2] 및 소비자생협동조합법 시행령안 제19조 [별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 [별표]가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가중처분 적용을 위한 기준 시점이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 되어 있어 일정 기간에 계속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나, 간헐적으로 한 위반행위를 적발했을 때 적용시점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이 발생함에 따라 부패 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시점을 "행위가 있는 날"에서 "적발된 날"로 개정 -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시점이 명확해짐에 따라 행정청의 재량이 줄어들고, 처분상대방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p>※ 의견 제시기간 : 8/19(금)~9/28(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과)로 제출</p>	2022-08-19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공정거래 위원회	<p>•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 <p>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최근 처분 횟수를 고려해 가중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분 차수를 세는 기준이 불분명해 집행상 혼란을 초래하고, 이는 법 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려 국민 권익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영업정지 처분의 차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영업정지 처분의 차수 적용 기준 명확화(안 별표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중된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 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규정 <p>※ 의견 제시기간 : 8/19(금)~9/28(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전자거래과)로 제출</p>	2022-08-19
	<p>•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 <p>「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의 항 번호가 변경되어 시행령에서 법률을 인용한 부분을 반영하고,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의 일반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개정하여 행정청의 자의적 집행으로 인한 부패 및 국민의 권리침해 우려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방문판매법 개정 사항 반영(안 제22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판매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에서 법을 인용한 부분의 항 번호 수정 <p>② 영업정지 처분 및 등록취소 기준 정비(안 별표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중처분을 적용하기 위한 적용시점 명확화 및 가중처분을 적용하기 위한 회차 적용 규정 신설 <p>※ 의견 제시기간 : 8/19(금)~9/28(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특수거래과)로 제출</p>	2022-08-19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기획재정 위원회</p>	<p>•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의원 등 10인)」</p> <p>문화산업은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21세기 신성장 동력 산업이면서 동시에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p> <p>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감소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세제혜택 제공을 통하여 이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p> <p>이에 내국법인이「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등 문화예술 분야의 기관·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그 기부금의 100분의 10을 세액공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85조의11 신설)</p>	<p>2022-08-17</p>
<p>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p>	<p>•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1인)」</p> <p>현행법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게 되어 있음</p> <p>이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에 대한 규율일 뿐, 대화 당사자 중 일부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아 법리 해석에 따라 본 법률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p> <p>또한 대화자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p> <p>따라서, 대화 참여자가 대화 녹음 시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구해야 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안 제3조, 제14조 및 제16조)</p>	<p>2022-08-18</p>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p>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p>	<p>•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의원 등 10인)」</p> <p>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거나 전기통신에 의한 폭언·협박·희롱 등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국가안보·범죄방지·재난구조 등을 위한 경우 등에 대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범죄의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p> <p>그러나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반면, 기술적인 미비점으로 인하여 발신번호 전체가 아닌 부분만 표시되는 경우가 있어 수신인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p> <p>이에 전기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는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포함한 전화번호 전체가 화면에 표시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84조의3 신설)</p>	<p>2022-08-18</p>
<p>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p>	<p>•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p> <p>등록상표가 실사용상표와 글자체가 다른 경우 글자체만을 바꾸어 상표를 출원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표준문자' 상표출원을 도입하고 '표준문자'로 등록된 상표를 글자체만을 바꾸어 사용하는 경우에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있는 상표로 인정하는 한편,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대상을 확대하여 상표 관리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함</p> <p>이와 함께, 원출원에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 이를 변경출원시 자동으로 인정하고, 심사관이 직권보정의 요건에 맞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직권보정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한편, 존속기간 갱신신청 후 새로운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상표권이 소멸 또는 포기된 경우 이미 낸 상표등록료를 반환하도록 규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p> <p>또한, 현재는 국내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국제등록상표 지정상품에 모두 포함된 경우에만 국제등록에 의한 국내등록의 대체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정상품의 일부만이 포함된 경우에도 대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국제상표기초상표권의 분할을 인정하여 해외 출원인 및 권리자의 편의를 제고하며, 국제사무국과 출원인계 중복하여 통지하고 있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등록여부결정서 통지 방식을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출원인에게 송달하는 것으로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p>	<p>2022-08-16</p>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p>더불어,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 등 타 지식재산권 법률과 달리 상표법은 상표권자가 상속인이 없이 사망한 경우의 상표권 소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권리관계가 불분명한바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현행 법조문에서 상표등록요건의 판단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 등을 개선하여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고자 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대상에 제3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상표('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를 포함하도록 함 (안 제33조제2항) ② 상표등록요건 판단시기에 관한 규정 중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하게 함 (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③ 특허청장이 지정한 문자 및 방식만으로 구성된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표준문자'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고, 표준문자 등록상표의 동일성 인정 범위를 규정함 (안 제36조 및 제225조) ④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 등에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이나 출원 시의 특례 취지 및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출원에 대해서도 그 주장 및 서류의 제출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 (안 제4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⑤ 심사관의 직권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않은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에 해당 직권보정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안 제59조) ⑥ 존속기간 갱신의 효력발생일 전에 상표권이 소멸 또는 포기된 경우에 이미 납부된 등록료를 반환하도록 함 (안 제79조제1항) ⑦ 존속기간갱신신청에 관한 기재 사항 등 요건을 상표권과 관련한 사항으로 정비함 (안 제84조) ⑧ 상표권의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 해당 상표권은 소멸되도록 함 (안 제106조제2항 신설) ⑨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대체 요건을 국내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전부를 포함하고 있을 때만 인정하던 것을 지정상품 일부만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인정하는 부분대체를 도입함 (안 제183조) ⑩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을 분할 제도를 도입함 (안 제187조 및 제200조) ⑪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의 통지를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출원인에게 송부하는 것으로 일원화함 (안 제193조의3 및 제220조)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보건복지 위원회	<p>•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p> <p>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여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그가 판매한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음</p> <p>그러나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에 같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영업정지 처분에 같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p> <p>또한,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을 상향함으로써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 수단을 강화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37조의2제1항 개정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p>	2022-08-17
	<p>•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p> <p>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식품등의 표시·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여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음</p> <p>그러나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에 같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영업정지 처분에 같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p> <p>또한, 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과징금을 상향함으로써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 수단을 강화하고,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20조제1항 개정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등)</p>	2022-08-17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보건복지위원회	<p>•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0인)」</p> <p>현행법령에 따르면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의 생산을 중단할 경우 그 사유 및 일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보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p> <p>그러나 해당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건강보험수가 조정, 규제 완화 또는 지원 확대 등의 대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으나,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p> <p>이에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를 생산 또는 수입하는 업체가 중단 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법으로 상향 입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생산 중단 계획을 통보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학회나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받도록 하며, 필요한 조치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조업자의 의료기기 생산·수입중단 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3조제5항 및 안 제31조의6 신설 등)</p>	2022-08-18
환경노동위원회	<p>•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p> <p>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파업이 평화적으로 해결된 이후 오히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불법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음</p> <p>대부분의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쟁의행위 자체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사건으로 다루고 있음에 더해 쟁의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될 때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있음</p> <p>한편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폭행, 재물손괴 등의 행위에만 손해배상을 적용할 뿐, 쟁의행위 자체에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손해배상을 적용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에도 그 소송가액의 한도를 법으로 정하고 있음</p> <p>월 2백만 원을 손에 쥐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에게 수천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오히려 그 목적이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 즉,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사용자의 소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음</p>	2022-08-12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p>이에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그 배상청구와 손해배상청구권의 강제집행을 목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지 못하게 하고,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할 책임이 없도록 함 (안 제3조)</p> <p>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에 대하여,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파업이라도 「형법」의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어 업무방해죄가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이것이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옥죄는 도구로 활용되어 왔음</p> <p>이에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한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 방식의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가 이 법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여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이 충실히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조)</p>	
국토교통위원회	<p>•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6인)」</p> <p>최근 해외직구 등 온라인 e-커머스가 확대되는 한편 코로나19 등 글로벌 팬데믹의 영향으로 백신 등의 의약품과 식품의 전 세계적 유통량이 급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온도 변화에 민감한 식품 및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온도 변화로 인한 변질 또는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정 온도를 유지하는 정온물류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p> <p>2021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전세계 냉장운송시장은 2019년 675억 5천만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성장률 20.05%로 증가하여 2024년에는 1,684억 5천만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 예견되고 있음</p> <p>정온물류 유통의 수요대상이 되는 물품 또한 식품과 의약품에서 각종 화학공학 또는 화학소재, 반도체 등 정밀제품까지 점차 확대되는 추세임</p> <p>그러나, 정온물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생산에서 소비자까지의 전 물류 보관·수송·관리 단계에서 특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첨단기술과 장비 등이 필요하지만, 국내 정온물류 주요기술은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하여 정온물류 기술을 개발·운용하고자 하는 물류기업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p> <p>이에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기업이 의약품, 농수산물 및 식품 등을 정온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p> <p>이와 같이 신선물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23조제3항 및 제57조제1항)</p>	2022-08-12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국토교통 위원회	<p>•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1인)」</p> <p>자동차(중고차) 매매업은 2019년 기준 연간 110만대를 상회하는 중고 차량에 대한 매매거래를 수행하는 등 대다수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산업 중 하나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매물 광고, 침수사실 등을 감춘 차량에 대한 품질 문제 등으로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p> <p>특히 사고나 침수사실은 전자부품 등으로 구성된 차량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고 판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법은 30일 이내에만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어 지나치게 기간이 짧은 문제가 있음</p> <p>침수 사실의 경우, 30일이 경과한 뒤에도 차량 등을 운행하면서 우연히 그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도 많고, 침수 사실 등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것은 법률상 사기에도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90일 이내에는 즉시 해제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호할 필요가 있음</p> <p>이에 따라 사고 또는 침수 사실 등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고 판매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58조의6제1항)</p>	2022-08-17
	<p>•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의원 등 11인)」</p> <p>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 등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처분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고 있음</p> <p>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제재처분에 대해서는 사고발생지역 관할 관청이 아니라 해당 업체가 사업등록을 한 지역의 관청에서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과 시의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p> <p>이에 건설공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해당 등록관청의 요청이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조사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함으로써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한 사전조사 등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처분지연을 해소하고 건설사고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91조제1항)</p>	2022-08-18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민생경제 안정특별 위원회</p>	<p>•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p> <p>최근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연말 기준, 원유(나프타)값이 55.3%(2021년 1월 508.5\$에서 2021년 10월 789.6\$) 급등하였고, 철광석과 펄프는 각 172.2%, 55.5%의 변동율을 보임. 중소기업의 86.2%는 공급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함</p> <p>이처럼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두고 있음. 하지만, 조정협의를 위한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거래단절 등 보복조치 우려로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p> <p>따라서 하도급대금에서 원자재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원자재 기준가격 및 하도급대금 조정 방법을 서면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거래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원자재 가격과 하도급대금을 연동하여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고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을 이룩하려 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하도급대금에서 원자재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원자재 기준가격을 서면에 기재하도록 함 (안 제3조제2항) ② 서면으로 정한 바에 따라 원자재 기준가격이 100분의 3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상승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함 (안 제16조의2제12항 신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5조제1항) 	<p>2022-08-17</p>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민생경제 안정특별 위원회</p>	<p>•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의원 등 13인)」</p> <p>최근 주요 철광석, 원유, 펄프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기업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중소기업중앙회의 발표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받았다는 업체는 4.6%에 불과하며, 현재 상황이 계속될 경우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생산량 감축 및 일자리 축소를 계획하고 있음</p> <p>현행법은 공급원가 변동 등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수급사업자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하도급대금의 조정은 어려운 것이 현실임</p> <p>따라서 하도급대금 조정 방법을 서면에 기재하도록 하고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방법을 서면에 기재해야 함 (안 제3조제2항) ② 원사업자는 서면으로 정한 바에 따라 주요 원자재 가격이 100분의 3 이상의 범위에서 변동할 경우,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해야 함. 다만,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0분의 3 이상으로 하락하였을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 한하여 서면에 기재된 하도급대금의 조정방법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여야 함 (안 제15조의2 신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가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반영된 금액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5조제1항) 	<p>2022-08-18</p>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상임위	아래【별첨1】참조		
국회도서관	8/23(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1호 발간 - 미국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 입법례	
	8/25(목)	「현안, 외국에선?」 제42호 발간 - 영국의 미성년 부모(Young Parents) 지원 정책	
예산정책처	주중	「NABO 재정동향 & 이슈」 - 국가재정상태 진단 및 주요 재정현안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	
입법조사처	8/24(수)	「NARS 입법·정책」 발간 - 미혼부모·한부모 자립지원 서비스 실태와 개선과제	

[별첨1] 제398회 국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운영위	8/23(화) 10:00	전체회의	간사 선임의 건, 소위원회 구성의 건, 2022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청원심사 연장의 건, 업무보고, 2021 회계연도 결산 상정
	8/24(수) 10:00	예·결산심사소위	2021 회계연도 결산 심사
법사위	8/22(월) 10:00	전체회의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정
	8/23(화) 14:00	예·결산심사소위	2021 회계연도 결산 심사
	8/24(수) 10:00	전체회의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결
정무위	8/22(월) 15:00	전체회의	2021 회계연도 결산 상정
	8/23(화) 10:00	예·결산심사소위	2021 회계연도 결산 심사
	8/24(수) 15:00	전체회의	2021 회계연도 결산 의결
교육위	8/22(월) 14:00	전체회의	청원심사 연장의 건, 미상정 법률안, 2021 회계연도 결산 상정
	8/23(화) 10:00	법안심사소위	법안 상정
	8/23(화) 14:00	예·결산심사소위	2021 회계연도 결산 심사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8/24(수) 14:00	전체회의	법안소위 의결 법률안, 2021 회계연도 결산 의결
문체위	8/24(수) 10:00	체육관광법안소위	법안 심사
	8/24(수) 14:00	문화예술법안소위	법안 심사
	8/25(목) 09:30	전체회의	법안 의결
농해수위	8/22(월) 14:00	전체회의	2021 회계연도 결산 심사
	8/23(화) 17:00	예·결산심사소위	2021 회계연도 결산 의결, 법안 상정, 청원심사 연장의 건
산자위	8/23(화) 10:00	예·결산심사소위	소위원회 구성의 건,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정
	8/23(화) 10:00	전체회의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환노위	8/22(월) 09:00	예결산심사소위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8/23(화) 10:00	전체회의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결, 법안 상정, 청원 심사기간 연장의 건
국토위	8/22(월) 14:00	체육관광법안소위	2021 회계연도 결산 상정
	8/23(화) 14:00	문화예술법안소위	2021 회계연도 결산 심사
	8/24(수) 14:00	전체회의	2021 회계연도 결산 의결
정보위	8/22(월) 10:30	전체회의	소위원회 구성의 건, 2021 회계연도 결산 상정, 업무보고
	8/23(화) 10:00	예·결산심사소위	2021 회계연도 결산 심사
여가위	8/22(월) 10:30	예·결산심사소위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8/23(화) 09:30	전체회의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결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8/22(월) 13:30	세계 원전시장 현황과 원전 수출 활성화 방안	양금희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실
8/22(월) 13:30	한국부채방지법학회-안철수 의원실 공동학술대회 - 신정부 출범에 따른 부채방지를 위한 공법적 과제	안철수 의원실, (사)한국부채방지법학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
8/23(화) 14:00	지방소멸 현실화 당면과제와 대응전략	여기구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8/23(화) 19:00	김한규와 경제 읽기 - 한중수교 30년과 한국 불평등 30년	김한규 의원실	의원회관 2간담회실
8/24(수) 10:00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한 개혁과제 세미나 - 기업승계,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를 중심으로	윤창현·최재형 의원실, (사)한국기업법연구소	의원회관 3세미나실
8/24(수) 14:00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 세미나 -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대개혁의 길	강민정 의원실, 국회공정사회포럼 등	의원회관 9간담회실
8/25(목) 14:00	조선업의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2탄 -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을지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등	의원회관 306호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제148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도서관	8/16(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0호 발간 - 주요국의 고령자 교육 입법례	
예산정책처	8/16(화)	「2021회계연도 결산 분석」 - 상임위 및 예결위의 결산심사를 효과적으로 지원	
	8/16(화)	「2021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 2021회계연도 총수입 세목별·항목별 증감 원인 및 주요 이슈 등을 분석하여 국회 결산 심사 및 의정활동 지원	
입법조사처	8/16(화)	「NARS 현안분석」 발간 -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서양 동맹의 미래	
	8/19(금)	「NARS 입법영향분석」 발간 - 주거급여법의 입법영향분석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 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 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성범** | 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 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방세희** | 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 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나인선** | 변호사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최유리** | 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 **성재열** | 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 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박건백** | 변호사 T. 02-316-4670 E. gbapark@shinkim.com
- **김은혜** | 변호사 T. 02-316-1736 E. ehkim@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